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구 미 시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시민 권익 및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규정 삭제(안 제1장 : 안 제1조 ~ 제3조)

나.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규정 삭제

(안 제2장 : 안 제4조 ~ 제9조)

다.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개정(안 제3장 : 안 제10조 ~ 제 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지방자치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장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규정 개정

제1조(「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설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파산선고”로 한다.

제2조(「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3조(「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
인”으로 한다.

제2장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규정 개정

제4조(「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자”로 한다.

제5조(「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을 “전염성질환”으로 한다.

제6조(「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신질환자 및 전염병”을 “전염병”으로 한다.

1. 음주자, 소란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

제7조(「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8조(「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자 또는 정신이상자”를 “자”로 한다.

제9조(「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3장 상위법령 불부합 개정

제10조(「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u>피한정후견인</u> , <u>파산선고</u>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6. (생략)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2. ----- <u>파산선고</u> ----- ----- 3. ~ 6. (현행과 같음)

□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u> 또는 <u>피한정후견인</u> 2. ~ 4. (생략)	제19조(결격사유) ----- ----- -----. 1. <u>피성년후견인</u> 2. ~ 4. (현행과 같음)

□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임원의 요건) ①도매시장 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2. (생략) 3.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 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u>피성 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이 없을 것 4. (생략) ② 삭제 ③ (생략)	제10조(임원의 요건)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피성 년후견인</u> -----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u>자 또는 정신질환 자</u> 2. ~ 4. (생략)	제9조(관람의 제한) ----- ----- -----. 1. ----- <u>자</u> 2. ~ 4. (현행과 같음)

□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제한) ----- ----- ----- -----.
1. <u>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u> 이 있는 사람	1. <u>전염성질환</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입관의 거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입관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입관의 거부) ----- ----- ----- -----.
1. <u>음주자</u>	1. <u>음주자, 소란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u>
2. <u>정신질환자 및 전염병</u> 질환이 있는 자	2. <u>전염병</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2. (생략) 3. <u>정신이상자</u> 4. ~ 6. (생략)	제7조(입장제한) ----- ----- ----- ----. 1. 2.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u>자 또는 정신이상자</u> 2. ~ 5. (생략)	제12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u>자</u> 2. ~ 5. (현행과 같음)

□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자료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입장제한)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정신이상자</u>	<u><삭제></u>
4. ~ 6. (생략)	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 ----- ----- ----- -----.

□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생략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 ⑤ 생략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김 은 영
	담 당	박 미 선
	담 당 자	강 다 영 (480-6528)